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 | | | |
|-------------------|--------------------|-------------------|
| ■ 1981년 3월 30일 제정 | ■ 1981년 11월 10일 개정 | ■ 1984년 9월 14일 개정 |
| ■ 1989년 2월 15일 개정 | ■ 1989년 9월 19일 개정 | ■ 1990년 2월 22일 개정 |
| ■ 1990년 5월 30일 개정 | ■ 1993년 9월 21일 개정 | ■ 1995년 5월 30일 개정 |
| ■ 1997년 5월 30일 개정 | ■ 1999년 5월 28일 개정 | ■ 2001년 5월 31일 개정 |
| ■ 2002년 5월 13일 개정 | ■ 2004년 3월 30일 개정 | ■ 2005년 3월 30일 개정 |
| ■ 2006년 3월 30일 개정 | ■ 2007년 3월 30일 개정 | ■ 2013년 3월 29일 개정 |
| ■ 2021년 3월 31일 개정 | | |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한국노총 규약 제14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본부의 설치】

산별노조산하, 인천지역내 조직간의 협력과 단결을 도모하여 노총의 사업목적과 운동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규약 제11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 ① 명칭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광역시 지역 본부라 한다. 약칭은 “한국노총 인천본부”라 하며 영어 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Incheon Regional Office Of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ICRO-FKTU)
- ② 지역본부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4조 【목적 및 사업】

지역본부는 지역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노총의 사업 및 목적의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향상활동
3. 조합간부의 양성 및 조합원 교육활동 그리고 지역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조직강화
4.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향상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
5. 지역조직의 문제점 발생시 공동지원 및 조정활동
6.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른 조직확대 활동
7. 기타 한국노총 운동방침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장 조 직

제5조 【구성】

- ①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노총 회원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인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 지부 조직
 2.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 산하의 지부조직
 3. 한국노총 지역지부, 회원조합의 시·도단위 지역조직
 4. 한국노총에 직가입한 지역일반노조
- ② 한국노총 규약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산하조직은 지역본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지역일반노조, 단위노조 및 그 지부는 한국노총 지역지부 및 회원조합의 시·도 단위 지역조직을 통하여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한국노총 회원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본부에 직접 가입(지역지부를 통해 가입한 조직포함)한 신규조직은 1년 이내에 한국노총 회원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
- ④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직은 한국노총 지역본부에 가입할 수 없다.
- 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의장단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직할로 지역일반노동조합을 둘 수 있다. 단, 지역일반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노총 소속 산업별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지역본부 조직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2 【관할】

- ① 지역본부의 관할은 행정구역에 따른다.
- ② 노동조합이 본조와 지역을 달리하는 그 산하 조직(지부, 분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행정구역에 위치한 지역본부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산하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에 조합원이 분포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행정구역의 지역본부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산업별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 등의 산하조직은 해당 행정구역에 위치한 지역본부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관할(조합원가입범위, 조합원 수의 적용에 따른 대의원 배정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가 규약, 규정 및 관행을 참고하여 조정하며 해당 조직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지역지부의 설치】

- ① 지역본부는 한국노총 규약 제11조 제3항에 의해 시·군·구 단위 또는 인접 시·군·구 연합의 형태로 지역지부(이하“지역지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한국노총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가입조직은 20개 이상, 조합원수는 3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지역지부의 분할, 합병은 당해 지역지부의 의결을 거친 후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지역지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준하여 정하되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지역지부 조직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역지부의 활동】

지역지부는 한국노총 규약 및 운동방침, 지역본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지부 운영규칙】

지역지부 운영규칙은 지역본부 조직운영 규정에 준하여 지역지부에서 제정 및 개정하고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 【권리】

지역본부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무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원조직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고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집행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한국노총으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4. 본 규정 범위내에서 평등하게 지역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공평하게 수혜할 수 있다.
5. 정의행위 및 노사분규 발생시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각 회원조직은 조직내 운영 및 소속 산별노조의 전속적 사항에 관여하는 지역본부에 의하여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7.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의무】

회원조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노총의 규약 및 본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를 준수한다.
2. 정치방침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활동방침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3. 지역본부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4.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회비의 기한내 납부의무를 진다.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1조 【기관】

지역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의장단회의
5.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12조 【대의원대회】

- ① 지역본부의 제반 방침 결정의 최고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둔다.
- ② 대의원 대회는 매년 개최하며 조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에 개최한다.

제13조 【구성 및 소집】

- ① 대의원대회는 본규정 제15조 1, 2항에 이거 회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서 선출된 대의원과 인천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의장이 소집공고한다.

제14조 【의안제출】

회원조직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최 10일전에 지역본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의원 배정 및 선출기준】

-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 조합원 중 대의원 대회 개최일 직전월까지의 3년간의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회원조직 대표자에게 대의원 1명을 우선배정하고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 기준 2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하며, 단수 10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그리고 단수 101명 미만인 경우 이를 산별로 합산하여 200명당 1명을 산별로 배정하고 산별합산 인원의 단수 10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가 1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조합원 50명~100명당 1명을,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50명 ~ 200명당 1명을,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50명~300명당 1명을 5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50명~400명당 1명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의 대의원 수는 최소 8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역본부는 제1호에서 정한 대의원 외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회원조직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할 수 있다.
 4. 각 회원조직은 과건대의원의 30%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직은 적어도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5. 대의원의 배정은 의무금을 납부한 지역조직(지역지부,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시·도단위 지역조직)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조직이 없는 단위회원조직에게는 직접 배정한다.
 6. 제4호에 의해 대의원을 배정받은 지역조직은 각 회원조직이 지역본부에 의무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과건하여야 한다.
 7.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위 원칙을 준용한다.
- ② 대의원 선출기준에 대한 세칙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 ③ 대의원 배정 회원조직은 늦어도 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의원의 명단, 소속, 선출일자를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신규가입조직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월말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24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납부 의무금으로 하여 배정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
 - ⑤ 제43조에 의해 권리가 정지된 조직에 대해서는 대의원 배정 시 그 기간(월단위로 계산)동안의 대의원 수를 산출하여 3년간 대의원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의2 【동전】

- ① 대의원배정시 기준이 되는 의무금 납부조합원수가 그 기준에 의한 실제 조합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 ② 조합원이 2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 의무이행을 한 인근지역 조합원에 한해 대의원을 배정한다.

제16조 【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시 의장이, 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1.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7조 【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조직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5.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9. 지역본부 합병·분할 또는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18조 【특별결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조직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합병·분할 또는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긴급동의 및 변안동의의 처결
4.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19조 【구성 및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결의기구로서 지역본부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및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보선된 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20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2.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3. 지역본부활동 및 운동방침 수립 검토
4. 각종 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6. 각종 기구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7. 실·국장 및 부서부장 인준에 관한 사항
8. 임원유고시 대책수립과 보선에 관한 사항
9. 회원조합의 제명에 관한 사항
10. 지역지부의 설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21조 【구성 및 소집】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및 실·국, 부장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22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및 제의
3.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4. 당면 노·사문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의장단 회의

제23조 【구성 및 소집】

지역본부 의장단회의는 의장, 부의장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4조 【기능】

의장단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종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2. 상벌에 관한 사항
3. 각종 회의에 부의할 안건 심의
4. 해외연수 및 파견에 관한 사항
5. 지역노동운동에 대한 제반 사항
6. 지역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5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나 의장이 소집한다.

제26조 【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6개월(상·하반기)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행한다.
 1.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 또는 회원노동조합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회계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공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다.
-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회계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임 원

제27조 【임원】

- ① 지역본부의 의장, 부의장 및 사무처장,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선출하며, 임원은 회원조직 조합원 중 선출한다.
- ② 지역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 장 : 1명
 2. 부의장 : 약간명. 단, 당본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의장 중 상임부의장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 : 1명
 4. 회계감사위원 : 약간명
- ③ 의장과 사무처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 회의록과 별도 양식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노총위원장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임원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인준취소와 관련한 절차는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 ⑥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한국노총위원장은 곧바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⑦ 임원의 인준이 취소된 지역본부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27조의2 【임원의 선거】

- ① 의장은 대의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 ②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 ③ 임원선거 및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3 【기타 임원선거】

- ① 기타 임원선거는 부의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출을 말한다.
- ② 전항의 기타 임원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기타 임원은 전항의 전형위원회 또는 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 1) 의장은 지역본부를 대표하여,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 2) 각종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 4) 사무처 요원을 임면하고, 한국노총위원장에게 한국노총 지역노동교육 상담소 요원의 임명을 추천한다.
- 5)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6) 규정 및 규칙의 해석권을 가진다.

2. 부의장

- 1)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의장이 한국노총으로부터 인준이 취소되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제27조 제5항에 의한다.
-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처장

-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의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 3)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조직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연도의 3월 말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사무처

제30조 【사무처】

- ① 지역본부의 일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산하 2실 7국 14부를 운영하며 실·국은 다음과 같다.(조직기구표 참조)
- ② 사무처장은 지역본부 사무처의 일상업무를 통괄 관장한다.

제31조 【부설기관】

부설기관으로 교육원, 노동상담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32조 【운영 규칙】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규율에 관한 사항은 노총의 사무총국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조직활동 및 쟁의지도

제33조 【쟁의지도】

- ① 회원노동조합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지역본부에 보고하며 지역본부는 쟁의의 조정 및 지원을 한다.
- ② 지역본부는 회원노동조합에서 발생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노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제34조 【조직분규예방】

지역본부는 신규조직 및 조직확장 시 관련 조직간에 분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조직간 긴밀한 연락 및 협조를 통하여 조직분규를 사전 예방한다.

제35조 【조직분규조정】

회원조직간 조직분규가 발생하였을 시는 관련 조직간의 조직분규를 조정하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는 관계조직으로 하여금 소속 산별 노동조합연맹을 경유하여 중앙조직 관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도록 권장한다.

제8장 재 정

제36조 【재원】

본 지역본부의 재정은 회원노동조합 조합원의 의무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 【의무금】

회원노동조합은 본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소정 의무금을 조합원수에 의거 매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금의 사용】

본 지역본부의 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써만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년도】

인천광역시지역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40조 【자산의 처리】

본 지역본부 자산의 처리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의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41조 【회계 규칙】

본 지역본부의 회계규칙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42조 【표창】

지역본부 의장은 노동운동 발전에 공이 있거나 지역본부 발전 및 명예를 위하여 공이 현저한 회원조직 및 조합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기타 공이 인정된 자는 협력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43조 【권리 정지】

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2개월 범위내에서 의무금 및 기금 할당액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내에는 권리정지가 보류된다.

제44조 【징계】

- ① 조합원 및 회원조합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역본부의 명예를 손상 또는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하였을때, 조직분열을 야기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경고, 정권, 제명)를 취할수 있다. 단, 징계결과를 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본부 임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천본부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시는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③ 구성조직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조합원이 소속한 회원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의 종류를 사전에 당해 조직에 통고한다.

제10장 해 산

제45조 【해산】

지역본부의 해산은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6조 【청산】

본 지역본부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선포대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청산한다.

제11장 업무의 지도 및 감사

제47조 【업무의 지도 및 감사】

- ① 한국노총은 조직의 통일성 및 지역본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무지도 및 감사를 실시한다.
- ② 업무감사는 연 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은 한국노총위원장이 지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8조 【감사의 보고 및 시정】

- ①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한국노총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한국노총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지역본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본부 의장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본 지역본부의 사무집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칙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본 규정에 의하여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시작된다.

제5조 【회의성립과 결의 정족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6조 【경과조치】

조직운영규정 제15조 1항은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년 또는 전전년 회계년도 미납분은 일시불로 납부하여도 적용 제외된다.

부 칙 (2021. 03.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조직운영규정 제15조의 대의원배정 및 선출기준은 2021년 3월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가입되는 회원조직에 적용하며, 기존 회원조합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배정한다.